

= 사하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=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6. 11. 20. ----- 사하구청장
- 나. 회 부 일 자 : 2006. 11. 21
- 다. 상 정 일 자 : 제144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('06.12.22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임석진 세무과장)

가. 제안이유

-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 시한이 200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정책적 목적상 지속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09. 12. 31까지 3년간 그 기간을 연장하고
- 사업이 종료되거나 정책 목적이 일정수준 달성되어 더 이상 세제지원이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폐지 또는 축소조정하며
- 감면 제도상 불합리하거나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임

나. 주요골자

- 부산항만 공사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최초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면제 하였으나 50% 경감으로 감면율을 축소함
- 기타 관련 법령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

3. 관계법령

- 「지방세법」 제7조 및 제9조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면제 하였으나 50% 경감으로 감면율을 축소하고 기타 사항은 조문을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일부분정비하는 내용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옳은 것으로 사료 됩니다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 론 요 지 : 없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의결